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45
----------	------

제출일자 : 2021. 3. 8.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설치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수렴 범위를 당초 ‘주요사업’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함. (안 제7조)

나.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설치 근거와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24조)

다.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의 재정 및 실무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2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1. 2. 10. ~ 3. 2.)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요사업에 대한”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하여”로 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7조제1항 중 “예산 분야별로 각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주민예산학교”를 “주민예산학교 및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로 한다.

제24조 앞에 “제6장 지원”을 삭제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회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회원은 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획

예산실장이 되며, 위촉직 회원은 제17조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1명, 전문가, 관련분야 활동경험자 등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회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당연직 회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회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 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연구회 위촉직 회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연구회 회장과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⑥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4. 예산교육,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등에 대한 활동 지원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

⑧ 연구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5조(중전의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 및”을 각각 “위원회, 연구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참여예산 위촉직위원”을 “주민참여예산 위촉직위원과 연구회 위촉직회원”으로 한다.

제25조 앞에 “제6장 지원”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생 략) ② 군수는 필요시 <u>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u> <u><신 설></u>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하여</u> ----- ----- -----.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예산 분야별로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u> ② ~ ⑦ (생 략) <u>제5장 주민예산학교</u> <u>제6장 지원</u> <u><신 설></u>	제17조(분과위원회) ① ----- ----- <u>분과위원회</u> ----- -----. ② ~ ⑦ (현행과 같음) <u>제5장 주민예산학교 및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u> <u><삭 제></u> 제24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① <u>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② <u>연구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u>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
직 및 위촉직 회원으로 구성하
고, 당연직 회원은 위원회 부위
원장 및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촉직 회원은 제17조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1명,
전문가, 관련분야 활동경험자
등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회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당연
직 회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
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회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회
원의 임기는 전임 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연구회 위촉직 회원의 해촉
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
용한다.

⑤ 연구회 회장과 부회장은 연
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
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협의회

<u><신 설></u> 제24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u>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사무를 처리한다.</u> ⑥ <u>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 ⑦ <u>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 1. <u>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연구</u> 2. <u>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u> 3. <u>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u> 4. <u>예산교육,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등에 대한 활동 지원</u> 5. <u>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u> ⑧ <u>연구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u> <u>제6장 지원</u> 제25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 --- <u>위원회, 연구회,</u> ----- ----- -----.
---	--

② 군수는 <u>위원회 및 지역회의</u>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u>주민참여예산 위촉직위원</u>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u>제25조</u> (생략)	② ----- <u>위원회, 연구회</u>, ----- ----- ----- -----. ③ <u>주민참여예산 위촉직위원과 연구회 위촉직회원</u> ----- ----- ----- ----- ----- -----. <u>제26조</u> (현행 제25조와 같음)
--	--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